벨라루스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벨라루스 공화국(Republic of Belarus)
2. 수도 : 민스크(Minsk, 198만 명)
3. 인구・면적 : 945만 명(2021년), 207,595,㎢(한반도의 약 95%)
4. 공용어 : 벨라루스어, 러시아어
5. 1인당 GDP : 6,658달러(2020년)
6. 독립일 : 1991. 8. 25.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Belarus

2. 연혁

❍ 1991. 8. 25.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
❍ 1994. 3. 15. 헌법 제정
❍ 1994. 3. 30. 헌법재판소법 제정
❍ 1994. 4. 헌법재판소 설립
❍ 1996. 11. 24. 헌법 수정조항 채택
❍ 2004. 10. 17. 헌법 수정조항 채택
❍ 2006. 6. 29. 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헌법재판소 관련 조항 : 제19조~제27조)
❍ 2008. 6. 26. 헌법재판소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정조치에 관한 대통령령[1] 제정

1)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No.14 of June 26, 2008 On Certain Measures to Improve the Activiti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Belarus.

(제1조: 사전통제 등 헌법재판소 권한 확대)

○ 2014. 1. 8. 헌법소송법 제정

○ 2014. 4. 8. 헌법재판소규칙 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Chairperson)과 부소장(Deputy Chairperson)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의 재판관(Justice)으로 구성 (헌법 제116조 제2항, 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재판관은 6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6인은 상원(The Council of the Republic)에서 선출 (헌법 제116조 제3항 제1문)

○ 헌법재판소장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헌법 제116조 제3항 제2문)

○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안으로 재판관 중에서 호선 (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제26조)

- 부소장은 소장의 부재 혹은 요청 하에 소장의 권한 행사 가능

○ 재판관의 임기는 11년으로 재선 및 중임 가능하며, 정년은 70세 (헌법 제116조 제3항 제3문, 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제92조)

○ 재판관 자격 : 고등법학교육 이수 및 학위를 취득하고,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의 지식을 가진, 고도의 법률적 자질과 도덕성을 겸비한 벨라루스 국민 (헌법 제116조 제2항, 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 상.하원이나 지역의회 의원 겸직 불가, 후보 등록 시 재판관 권한 정지 (헌법 제92조 제4항, 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4조)

4. 권한

○ 사후적 규범통제(헌법 제116조)

- 법률, 명령, 대통령령 및 벨라루스 정부가 비준한 국제법규의 헌법에의 합치 여부 심판
- 국가조직에 관한 규칙 및 대통령령의 헌법, 법률, 명령과 국제법규에의 합치 여부 심판
- 내각령, 대법원규칙, 최고경제법원규칙, 검찰총장령의 헌법, 법률, 국제법규

와 기타 명령에의 합치 여부 심판

- 기타 국가기관이 제정한 명령의 헌법, 법률, 명령과 국제법규에의 합치 여부 심판

○ 사전적 규범통제

- 국회 법률안 위헌 여부 심판
- 서명 전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 판단

○ 의회에 의한 제도적 또는 명백한 헌법 위반 사실 및 지방의회에 의한 제도적 또는 명백한 법률 위반 사실 판단

○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대통령령 및 명령에 대한 공식적 해석 제공

○ 외국, 국제기구 또는 그 기관의 문건이 벨라루스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의 합치 여부에 관한 입장 표명

○ 국가기관의 규칙 제정 및 법률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합헌성 심사

○ 헌법상 적법성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연례 메시지 채택

5. 심리 및 결정

○ 재판관 8인 이상 출석 시 심리 가능 (헌법소송법 제14조)

○ 규범통제의 청구권자는 대통령, 상·하원, 대법원, 각료회의임

○ 기타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일반국민은 규범통제 청구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헌법재판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장은 1인 이상의 주심재판관을 지정하여 사건을 배당하고 2개월의 범위 안에서(1개월 연장가능) 검토 기간을 지정 (헌법소송법 제37조)

○ 구술심리와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함 (헌법소송법 제7조, 제11조)

○ 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다수결로 결정, 가부동수일 경우 합헌으로 결정(헌법소송법 제75조)

○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반대의견을 명시하여야 함 (헌법소송법 제76조)

○ 규범통제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유를 제시하고 심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제기한 국회의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심판사건의 경우 심리를 거부할 수 없음 (헌법소송법 제132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음 (헌법소송법 제85조)

6. 기타사항

○ 재판관은 재판 준비 과정 중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조사 요청 가능 (헌법소송법 제39조)

7. 연락처

○ 주소 : 4 Krasnoarmeyskaya St., Minsk, Belarus
○ 전화번호 : +375-17-327-32-73
○ 이메일 : interdept@kc.gov.by
○ 홈페이지 : http://www.kc.gov.by/en/main.aspx

※ 출처 : 벨라루스 헌법
벨라루스 헌법소송법
벨라루스 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벨라루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2021. 4. 작성)